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1,204,986	16,236,150
일반회계	406,635,502	12,199,065
특별회계	134,569,484	4,037,085
공기업특별회계	3,295,271	98,858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3,295,271	98,858
기타특별회계	131,274,213	3,938,2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567,535	587,02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9,774	20,693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43,778,627	1,313,35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468,400	224,05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7,438,922	823,168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1,572,090	47,16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2,669,682	380,090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910,802	27,324
의령군하천골재채취근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7,150,067	514,502
의령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8,314	84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략"

제 4 조 "생략"

제 5 조 "생략"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176,08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